

예산총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21,311,683	18,639,350
일반회계	555,225,236	16,656,757
특별회계	66,086,447	1,982,593
공기업특별회계	58,004,312	1,740,12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746,158	772,38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258,154	967,745
기타특별회계	8,082,135	242,464
지하수특별회계	671,000	20,130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1,574,946	47,248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1,836,189	55,086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4,000,000	120,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977,555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3.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
|---|--|